

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(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(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을 포함한다)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한다.